

外國의 標準化制度와 食品規格管理

朴 武 鉉

〈農水產物流通公社 綜合食品研究院〉

1. 外國의 工業標準化 制度

前號에서는 標準化 一般과 우리나라의 工業 標準化制度에 대하여 記述한 바 있다.

이번 號에서는 外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標準化制度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食品標準制度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제 2 項에서는 食品標準化制度和 食品衛生管理制度의 차이점을 外國의 예를 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標準化制度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食品에 관한 規格管理는 日本 등과 같이 獨立法을 制定하여 工業分野와 分離運營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公産品과 同一法 아래 統合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우선 각국의 規格制定 現況을 對比하여 보면 表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總規格數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食品分野에서는 제일 낮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래 우리나라의 製造業 分野에 대한 國家의 관심도와 발전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重化學 分野는 크게 발전되었으나 食品産業 分野에서는 國家의 관심과 發展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가. 日本의 標準化 制度

日本의 표준화제도는 JIS(工業標準 : Japa-

表 1. 주요 국별 규격제정 현황

國別	區分	規 格 名	관장부서	總規格數	食品全數	加工食品	原料 其他
韓 國		KS	工業振興廳	7,412	28		—
			農林水産部	63	70	63	
日 本		JIS	통산성	7,744	—	—	—
			JAS	농림성	415	415	337
美 國		ANSI	상무성	7,818	—	—	—
			USDA	농무성	382	382	172
英 國		BS	상공부	9,800	83	23	60
印 度		IS	상공부	8,755	859	390	469
臺 灣		CNS	경제부	10,815	729	369	277
團 體		ISO		5,273	298	298	—
團 體		FAO/WHO		239	239	183	56

nes Industrial Standards)制度와 JAS제도로 양분되어 있으며, JIS는 食品部門은 包含되지 않고 통산성에서 運營(총 7,744 規格制定)하고 있다.

1) JAS(農林物資 標準化制度,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制度

가) 制定機關: 日本 農林省 食品流通局 消費經濟課

나) 根據法: 農林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關한 法律, 50年 5月 法律 第175號로서 公布되었으며, 70年 5月에 대폭 改正을 거쳐 8次改正되어 현재(83.5)實行中에 있다.

다) 法機能: 任意法

라) 目的: 農林物資의 品質改善, 生産의 合理化, 流通去來의 單純化 및 品質에 關한 適正한 表示를 하여 一般 消費者의 選擇에 도움을 주고 公共의 福利增進에 寄與하고자 함.

마) 운영실태

JAS制度가 50년에 發足할 당시는 1次 農産物 내지 일부 加工品만을 取扱하였으나 食生活이 多樣化되고 고급화 趨勢에 따라 61년부터 대폭 加工食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信賴도가 보다 높아졌고 또 購入時 選擇의 案內로서 큰 役割을 하고 있다. 85년 11월 현재 약 415개 규격, 품질표시기준은 40개 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그중 식품은 337개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며, 85년 7월 1일 현재 JAS표시제품 승인 또는 인정받은 생산공장수는 10,613개이다.

JAS제도의 운용방법 및 施策은 사업자의 自由意思에 따라 수검을 選擇할 수 있으며, JAS로 정해진 것은 법에서 동일품목의 新規制定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食品自體의 성분규격과 표시규격의 주류는 JAS가 關장하고 위생분야는 식품위생법에 위임하고 있다. 政府는 JAS마크의 信賴性과 普及에 努力함으로써 消費者의 食品選擇에 JAS마크가 큰 役割을 할 수 있게 誘導하는 施策을 推進하고 있다. JAS는 消費者保護를 위한 기본법의 부대적인 條件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 規格의 對象品目

이 제도에서 말하는 農林物資란 주류, 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飲食料品 및 油脂, 농수축산물 및 林産物과 이를 原料 또는 材料로 하여 製造·加工한 物資(모든 飲食料品 및 유지 除外)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기범위 중에 해당되던 國內에서 생산되는 것과 輸入되는 것 모두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사) 제도의 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① 農林省 傘下 專擔指導監督機關: 農林規格檢査所(전국 6개 檢査소, 759명)

② JAS表示格付機關: 도·도·부·현, 농림수산성의 機關 및 登錄格付機關

·도·도·부·현 및 농림수산성의 기관: 1次 農産物과 임산물의 일부에 대해서 극히 소수분야의 格付를 행하고 있다.

·登錄格付機關(32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등록격부기관이 격부, 민간단체가 농림수산성의 승인을 받아 격부판정을 하고 있다.

③ 보급촉진기관:

·농림수산성: 講演會 開催, TV·라디오·印刷物 등을 통하여 PR 및 영화·슬라이드의 작성·대여 등을 하여 JAS制度의 普及促進을 한다.

·일본농림규격협회: 展示會, JAS일일교실 開催, 포스터, 規格解説 팜플렛의 작성 및 보급, JAS제도의 보급에 협력하는 소매점을 JAS협력점으로서 인정하여 JAS마크품 우선 販賣토록 展示 등 PR을 하고 있다.

나. 미국의 표준화 제도

1) 일반공산품 표준규격

·ANSI(미국국가규격) 제도 운영: 식품 부문은 포함되지 않음.

·관장부서: 상무성(총 7,818규격 제정)

2) 농무성 규격(USDA)

가) 제정기관: 미국 농무성 농업유통국 시장과

나) 根據法: 變質되기 쉬운 農産物에 關한

規程(Regulation Under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1930)으로 농산물 유통법에 관한 規程과 規格(Regulation and Standard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이 있다.

다) 法機能 : 任意法

라) 目的

原料 農水畜林産物의 規格과 이의 가공품에 대한 規格, 그리고 農藥, 飼料 등 광범위한分野에 걸쳐 規格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單位, 品質, 포장 등의 標準化를 통하여 流通秩序의 公正化와 국가 및 소비자 保護에 목적이 있다.

마) 운영실태

USDA 제도는 1883년에 發足 당시는 물량치에 대한 規程으로만 運用되었으나 80년에 變質되기 쉬운 農産品法 制定과 46년에 농산물유통법이 농무성장관의 임무하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規程은 1次 농수축림산물 規格과 가공식품의 規格으로 통조림, 건조제품, 절입식품, 冷凍食品 등의 規格이 있다. 이들 規格은 식품등급의 기준과 농산물의 분류와 質량을 단일화 및 표준화하여 유통거래의 公正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83.4월 현재 약 3,000여종의 規格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중 식품은 382개 規格이 제정되어 있다. 공식마크 種類는 등급마크, 검사마크, 검사 및 등급마크,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마크 또는 기타 마크가 있으며 정부는 '63년에 USDA의 모든 規정을 CFR(연방규정집)에서 일괄 발간토록 하였다. 농산물 규정집은 CFR내의 Title 7에 규정되어 있다. 농산물 규정집은 총 25권을 통하여 농무성의 規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叢書이다.

바) USDA 제도의 운용방법 및 시책

임의규정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희망에 따라 公共검사기관에 품질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등의 국제간 유통에 품질기준으로 활용되고 자국의 식량공급에 있어 세계의 다른 곳보다 더 광범위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

품의 품질등급규격은 USDA가 관장하고 위생적인면을 중시하는 규격은 FDA가 관장하고 있다.

사) 제도의 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 감독 및 주관행정기관 : 농무성 농업유통국

○ 공장검사(검사인가·등급등) : 당국이 위임하는 농무성의 고용인이 행함.

다. 자유중국의 표준화제도

1) 제도명 :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제도

2) 제정기관 : 경제부 중앙표준국 :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3) 근거법 : 정자표기 관리규칙

4) 성격 : 일반공산품과 식품을 통합한 국가 規格제도 운영

5) 법기능 : 임의법

6) 목적

단위, 명칭, 품질, 치수, 시험절차 및 안전도 등의 規格에 따른 산업표준화 사항의 장려, 국민생계와 보호의 요청에 따른 국가보증표시의 집행,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생산업체 품질관리의 지원을 행한다.

7) 운영실태

총 10,815 規格 중 농수축산 및 식료품 부문 729개 規格이 제정되어 있으며(식품 369 規格) 24개 전문위원회(1,232명의 전문위원)와 표준심의회(40명, 의장 : 표준국장)가 구성되어 規格관리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KS 제도와 운영형태가 유사함)

라.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 제정기관 : ISO 중앙표준국

2) 성격 : 전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 規格 업무를 다루는 국제표준화기구

3) 기능 : 세계 規格수준의 통일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목적

상품의 국제적 교환과 공동협력개발을 조장

하기 위해 세계적인 규격의 표준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품의 품질개선, 원가절감, 생산성 증대 및 무역의 확대를 지향한 전세계적인 국제규격의 합의를 도모하고자 함.

5) 운영실태

총 2,300여 전문위원회와 전세계 20,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參與하여 國際規格을 制定하고 있으며 총 5,273 규격이 제정(식품: 298) 되어 있다. 회원국수는 81개국(정회원 74, 通信會員 15)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다. FAO/WHO 國際食品規格

1) 제정기관: FAO/WH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 성격: 식품의 위생 및 품질적인 측면에서 규격업무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식품표준기구이다.

3) 목적: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을 작성·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공정한 취급보증을 도모하고자 함.

4) 운영현황

- 가맹국수: 130여국
- 규격제정: 400여 규격
- 전문위원회: 25분야
- 각 지역별 규격기준 통일 및 문제해결을 위한 4개 지역 조정부회(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도 있음.

2. 각국의 식품표준화제도와 식품위생제도 관계

가. 제도 差異點

食品 標準 規格	食品 衛生 規格
◦ 韓國: 工業標準化法 ◦ 日本: 農林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關한 法	◦ 韓國: 食品衛生法 ◦ 日本: 食品衛生法 (그외 大部分 國家 共通)

◦ 美國: USDA —Regulation Under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1946) —Regulation and Standard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 美國: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및 the Packing & Labeling Act.
◦ 食糧의 消費流通의 圓滑(去來의 單純公正化)	◦ 飲食에 起因하는 衛生上의 危害發生 防止
◦ 品質保證(生産能率의 向上 및 品質改善)	◦ 公衆衛生의 向上과 增進
◦ 任意法 —國家規格(品質)에 適合한 食品에 對하여는 國家가 品質保證	◦ 強制法 —人體危害事項(食品, 加添物, 包裝)에 對하여는 強制適用
◦ 農林省 流通局(消費經濟課): 日本, 美國, 韓國	◦ 保健社會部 食品衛生局(世界共通)
◦ 商工省(部): 英國, 印度	※ 世界各國에서 食品衛生規格과 標準規格은 分離運營하고 있음.
◦ 經濟部: 中國	◦ 衛生의 安全保障事項(品質, 製造工程, 添加物基準, 色素, 病原微生物, 汚染度, 殘留農藥, 重金屬, 其他 保健危害憂慮 事項)
◦ 品質, 等級事項(形狀, 品位, 值數, 等級成分, 種類, 包裝單位, 製造工程)	◦ 韓國—國立保健院 —地方保健試驗所
◦ 韓國: 農水產物流通公社 綜合食品研究院	◦ 日本: 一國立衛生試驗所 —國立豫防衛生研究所
◦ 日本—農林省 綜合食品研究所 —JAS檢査所 —品目別JAS 格부기관	◦ 美國: 一FDA食品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美國: 農林物資 Marketing Service (Standard Inspections Marketing Practices)	

나. 規格化 事項 比較(實例)

食品標準規格	食品衛生規格	備考
(USDA 땅콩 Butter) 品質等級規程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FDA땅콩Butter) 衛生規程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添加物, 脂肪含量 基準)	

(Texture, Style, 品質等級基準)		
(韓國KS規格) ◦ 정제콩기름: 規格項目이 類似하나 保社部基準보다 다소 強化되어 있음. ◦ 두부: 規格項目이 類似하나 保社部基準보다 다소 強化되어 있음. ◦ 햄: " ◦ 라면: "	(韓國食品衛生規格) ◦ 정제콩기름: 規格項目이 類似하나 KS規格보다 다소 낮은 品質水準이고 大部分 KS品質과 同一하게 規程하고 있음. ◦ 두부: 規格項目이 類似하나 KS規格보다 다소 낮은 品質水準이고 大部分 KS品質과 同一하게 規程하고 있음. ◦ 햄: " ◦ 라면: "	規格項目이 類似하며, 各 規格의 特殊性이 없음
(日本JAS規格) ◦ 即席麵: 規格項目이 食品衛生規格과 다르며 種類別로 區分된 品質詳細規格임 가. 適用範圍 ◦ 4 個種類로 區分된 即席麵 각각에 대하여 個別 規格을 適用(중화면, 和風麵, 歐風麵 스페셜) 나. 規格內容 ◦ 品質事項 一 製品全般: 一般性狀, 異物, 食味內容量, 容器, 包裝狀態	(日本衛生規格) ◦ 即席麵: 規格項目이 衛生關聯事項인 산가, 과산화물가에 한하고 있음. 가. 適用範圍 ◦ 種類區分이 一括適用	日本, 美國의 食品衛生規格은 衛生側面의 規格事項을 심도 있게 規制하고 USDAS, JAS는 品質水準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規定하고 있음.

一麵의 品質 : 水分, 酸價, 요도정색도, 原材料, 添加物 ※酸價: 1, 2 以下 一調味料(Soup) 및 加藥, 調味料 엑기스분, 添加油脂산가, 합성감미료, 합성착색料 및 표백제 ◦ 表示事項 品名, 原材料名, 內容量, 製造年月日, 流通期間 保存方法, 調理方法 ◦ 表示方法 ◦ 表示禁止事項

다. 食品製造許可 및 KS表示許可制度對備

